

---

## 제2부

# 주요 언론조정사례

---

### 제5장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1 2023서울조정2626/2627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개인 간 법적 분쟁을 다룬 보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 관련 사안임을 감안하여 열람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혼 조정 중인 신청인의 남편이 신청인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고, 두 달여간 딸을 만나지 못했으며, 신청인이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공모하여 신청인 남편이 딸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딸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남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고, 검찰도 피의사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어린 딸아이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과의 통화를 통해 신청인 남편이 이혼소송과 사문서위조 고소 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전략적으로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도를 편파적으로 했고, 특히 보도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상간남으로 칭하며 신청인과 폭행을 공모했다고 해 신청인을 ‘상간을 저지른 사람’,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상간남과 공모하여 남편을 허위고소한 사람’ 등으로 보이게 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면서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동영상플랫폼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매개된 조정대상보도도 열람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남편의 제보 문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보자의 성추행 혐의는 항고에 의한 재수사에서도 재차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신청인의 불륜 상대는 가정법원의 배상판결로 그 존재가

인정되었으며, 공모 혐의도 블랙박스 음성 등으로 정황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였으며, 신청인의 입장도 반영하였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중재부는 본 건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확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우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②의 다시보기 영상이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종합유선방송(CATV), 포털 사이트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조정대상보도 ②의 VOD 서비스 중단을 통지함으로써 조정대상보도들이 노출 및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2 2023서울조정1688·1689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지방경찰청과 수사 대상인 병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이 열람차단을 제안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합동 현지조사를 받는 중인 ○○병원에 대해 △△경찰청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려 그렇지 않아도 해당 병원을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던 △△경찰청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입건 후에는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수사 인력을 1명만 배치하였으며,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반려되었음에도 보완 수사나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는 등 수사미진이 이어졌고, 내사 진행 사항을 병원 측이 알고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사건 정보가 누설된 정황도 있어 △△경찰청과 병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본권 10권 5,500페이지, 별권 12권에 이를 만큼 수사를 면밀히 진행했으며, 압수수색영장도 여러 차례 신청하여 계좌와 통신 영장은 발부 받았으나 현장 영장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 불청구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건 소관부서 변경은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것으로 해당 수사팀은 4명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 언론사가 수사의 중립성, 직무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신청인 기관과 수사관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경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치밀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보완 수사와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았고, 본 사안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정황이 있었기에 해당 의혹을 보도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사 종결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비공개로 제출한 수사자료를 검토한 후, 보도 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인정된다며 해당 부분은 정정을 하고 그 외는 신청인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수사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확인이 불가하다면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신청인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동일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본 사건 신청인인 경찰청 외에 신청인 소속 경찰관 또한 별개의 조정을 신청했고, 본 사건이 열람차단으로 조정 성립됨에 따라 해당 사건도 피해가 구제되었음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20XX. X. X.(X) 정오까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3 2023전북조정1·2·3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수정)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정식 스포츠 선수임에도 신청인의 의상과 기술을 선정적이라고 표현한 보도와 관련,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영상 캡처 사진을 삭제하고, '선정적'이라고 한 보도 제목과 본문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이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을 비판하면서, 폴 웨어를 입고 폴댄스를 추는 장면은 과거 주류 광고가 연상될 정도로 아슬아슬하다고 표현했다. 또한, 영상에 등장한 소녀의 나이가 11세로, 폴댄스 의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인공이 미성년자여서 제작 의도에 뒷말이 나온다면 “민망하다”는 취지의 지역민 인터뷰를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현재 △△도 대표로 많은 국내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는 폴스포츠협회 등록 선수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해당 스포츠에 맞는 의상을 입고 폴스포츠 규정집에 따른 기술을 선보이는 장면을 주류 광고에 빗대어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홍보 영상이 삭제된 상태임에도 부정적 보도에 신청인 영상이 노출되어 신상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내용은 영상에 등장한 신청인이나 스포츠 종목 자체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금을 들여 만든 홍보물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상에 등장한 신청인 초상을 비식별 처리하여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논란에 대한 △△도 사과 브리핑을 바탕으로 부가 설명을 충실히 반영한 후속 보도를 이미 게재한 바 있다고 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가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한 점, 신청인을 배려하지 못한 일부 표현이 있는 점 등이 아쉽다고 지적했고, 피신청인도 △△도의 홍보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신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한 2차 심리기일이 지정되었고, 이후 양 당사자가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한 영상 캡처 사진의 삭제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부제목 및 본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폴웨어를 입은 소녀는 그 기둥에서 춤 실력을 뽐낸다. 폴댄스가 끝나고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서 자막이 나온다.

언뜻 과거 주류 광고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슬아슬한 이 영상은 놀랍게도 △△ ○○군 공식 유튜브에 있는 지역 관광 홍보 광고다. **[중략]**

영상에 등장하는 이 소녀의 나이는 당시 11살. **[중략]**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도가 지난 연말에 만들었다. **[중략]**

□□에 사는 김모(40)씨는 “공공기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볼 때도 민망한데 이게 ◇◇◇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초상이 노출된 사진 및 일부 보도내용은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수정된 보도문을 전송하여 게재하도록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문을 수정 내용이 반영된 기사로 수정한다.

#### 기사수정

##### <조정대상보도 주제목 수정>

(수정 전) 보름달과 폴댄스... 미성년 등장하는 선정적 홍보 영상 논란

(수정 후) 미성년 등장하는 △△도의 홍보 영상 논란

##### <조정대상보도 부제목 수정>

(수정 전) △△도가 ◇◇◇ 알릴 목적 제작.. “비판 예상돼 영상 삭제”

(수정 후) ◇◇◇ 알릴 목적 제작.. “논란 예상돼 삭제”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①>

(수정 전) 언뜻 과거 주류 광고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슬아슬한 이 영상은 놀랍게도 △△ ○○군 공식 유튜브에 있는 지역 관광 홍보 광고다

(수정 후) 이 영상은 △△ ○○군 공식 유튜브에 있는 지역 관광 홍보 광고다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②>

(수정 전) □□에 사는 김모(40)씨는 “공공기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볼 때도 민망한데 이게 ◇◇◇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수정 후) □□에 사는 김모(40)씨는 “공공기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일부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중 ‘…………’와 조정대상보도에 첨부된 신청인 초상이 나온 사진을 삭제한다.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4 2023충북조정16·17/18·1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기사수정, 일부 열람차단)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협의를 토대로 중재부가 기사수정과 일부 열람차단을 직권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 씨가 약 9만5천700㎡에 이르는 임야에 ‘○○○ ○○○○○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했으며, 관할 관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 A 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상복구와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한 상태이고 검찰 고발도 예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A씨가 허가도 받지 않은 ‘○○○ ○○○○○원’을 개발한다며 투자를 권유해 역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 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임야의 면적은 약 6만9천244㎡이며, 임야 내에서 진행된 공사는 20XX년 X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향후 침수피해 방지 목적이었고, 공사 진행 당시 관할 관청이 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으며, 오히려 수해 복구를 통해 산림을 보존한 것이라고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보도에서 언급한 ‘○○○ ○○○○○원’ 건설의 경우, ‘○○○ ○○○○○원’의 배후지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야 개발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수해 복구 외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바 없고, △△시가 신청인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한 사항도 수해 복구 시 사용했던 임시가설물 관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은 제보자가 신청인 사업체의 창업 초기에 자금을 출자하고 상임이사로 재직한 적은 있으나 투자를 통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종용하거나 사기행위를 벌인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일부 사진은 보도내용과 무관한 사진이라며 보도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등 인격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자가 진술과 함께 제공한 자료와 현장 확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고, 신청인이 최초 통화 이후 연락을 회피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취재기자와의 직접 통화 이후에도 신청인 친지가 기자에게 연락하여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어떤 사업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알렸으며, 제보자가 신청인에게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는 대가를 모두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일부 자료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해 정정보도 또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보도문 게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재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당사자 간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3일 이내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리겠다고 고지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 사항을 통지함에 따라 중재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협의 문안을 토대로 기사수정 및 일부 열람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① □□ △△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XX년부터 A씨(60대)가 아들(20대)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 ○○○○○원' 개발 목적 산림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A씨(이하)의 행동으로 해당 지역 전체 임야면적 약 9만5천700㎡ 중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관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X월 XX일 A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묘지를 정리한 것이고, 지저분한 산림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으로 수일 내에 함께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XX년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일대를 '○○○ ○○○○○○원'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년간 6억여 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중략]**

이 마을 이장은 **[중략]** 그분 산의 일부 나무가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면사무소에 피해목 신고를 하고 아릅드리 참나무 100여 개를 벌목한 적은 있다고 했다. **[후략]**

②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XX년부터 '○○○ ○○○○○○원' 개발 목적으로 A씨(60대)가 아들(20대)과 마을이장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A씨(이하)의 행동으로 해당 지역 전체 임야면적 약 9만5천700㎡ 중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관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X월 XX일 A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묘지를 정리한 것이고, 지저분한 산림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으로 수일 내에 함께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XX년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일대를 '○○○ ○○○○○○원'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년간 6억여 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중략]**

이 마을 이장은 **[중략]** 그분 산의 일부 나무가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면사무소에 피해목 신고를 하고 아릅드리 참나무 100여 개를 벌목한 적은 있다고 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차단(삭제)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기사 수정사항

##### <조정대상보도 ② 주제목 수정>

(수정 전) △△ ◇◇면 산림 무단훼손 A씨... 엄벌해야...

(수정 후) △△ ◇◇면 산림 무단훼손 A씨... 복구명령 받아

##### <조정대상보도 ② 본문 수정 ①>

(수정 전)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XX년부터 '○○○ ○○○○○○원' 개발 목적으로 A씨(60대)가 아들(20대), 이장 등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산림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

(수정 후) □□ △△시 ◇◇면 일대 임야 약 6만9천244㎡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XX년부터 A씨(60대)가 아들(20대), 이장 등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산림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

<조정대상보도 ② 본문 수정 ㉔>

(수정 전) 전체 임야면적 약 9만5천700㎡ 중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 후) 전체 임야면적 약 6만9천244㎡ 중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보도 ② 본문 수정 ㉕>

(수정 전)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XX년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일대를 ‘○○○ ○○○○○원’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년간 6억여 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수정 후)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XX년 □□ △△시 ◇◇면 임야 약 6만9천244㎡ 일대를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년간 6억여 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 및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첫 번째 자료사진(이미지 및 설명 포함)에서 「‘○○○ ○○○○○원’」을 모두 삭제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세 번째 및 네 번째 자료사진(이미지 및 설명 포함)을 모두 삭제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 등 6개 문장을 모두 삭제한다.